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7
----------	-----

제출년월일 : 1998.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96. 7. 1.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5100호)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의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 하는것임.

□ 주요골자

가. 도로점용료에 있어 징수제외하는 소액점용료 산정 금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5천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함.

(예 : 1,950원 → 1,900원)

다.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도관등 관의 종류를 당초에 ① 직경 0.1m이하 ②직경 0.1m초과 0.2m이하 ③직경 0.2m초과 0.4m이하 ④ 직경0.4m초과 0.6m이하 ⑤직경 0.6m초과 0.8m이하 ⑥직경 0.8m초과 1.0m이하 ⑦직경 1.0m초과로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⑦직경 1.0m초과 분을 ⑦직경 1.0m초과 2.0m이하 ⑧직경 2.0m초과 3.0m이하 ⑨직경 3.0m 초과로 세분하여 9단계로 변경함.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중 “500원”을 “5,000원”으로 “징수”를 “부과”로 한다.

제5조3항의 제1호중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명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점용료의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기준에 의한다”를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1항 제1호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이후의 년도분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1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수도관, 하 수도관, 전기 관,전기통신 관,가스관,송 유관, 기타이 와유사한 것	수도관,하수 도관,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유 관,송열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3.0m초과			5,250
	기타의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3.0m초과			7,850

별표1의 비고란 제1호중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말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동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5호의2 내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5의2. 위표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의3. 위표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 -----5천원-----부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공사용시설은 <u>건설교통부 표준품셈</u> 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1. ----- <u>건설표준품셈</u> ----- ----- -----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시 전액을 징수한다.	(삭제)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삭제)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 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삭제)
(신설)	② 제1항에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신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이후의 년도분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 행

제7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
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관련)

(금액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면적	기간 단위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송 유관,기타 이와유사 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일관, 전기관, 통신시설 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1.0m초과			3,000
		(신설)			
		(신설)			
	기타의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1.0m초과			4,500
		(신설)			
		(신설)			
3~10 (생략)	(생 략)				

개 정 (안)

제7조 (점용료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강제징수
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관련)

(금액 : 원)

집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집용료			
			집용 면적	기간 단위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등	차등	차등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전 기통신관, 가스관,송 유관,기타 이와 유 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가스 관,송유 관,송인 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1.0m초과 2.0m이하			2,250			
		직경2.0m초과 3.0m이하			3,750			
		직경3.0m초과			5,250			
		기타의관			직경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1.0m초과 2.0m이하	3,350							
직경2.0m초과 3.0m이하	5,600							
직경3.0m초과	7,850							
3~10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안)
※ 비교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u>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u>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4 (생략)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u>기간단위가 1년이상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u>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1,400원, 1,995원→1,950원) (신설) (신설) 6~10 (생략)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2~4 (현행과 같음) 5.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5의2 위표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 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의3 위표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 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10 (현행과 같음)

(본조신설 96·7·1)

제26조 (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5조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법 제4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1·8·5>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3·8·14)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대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6·7·1>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8·14)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 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3·8·14)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 1 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주 74)

[별표 2] (개정 96.7.1)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 1 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소 재 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 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와 유사 한 것	전 주		1개	1년	1,350	900	600
	전 주 와 유 사 한 것				2,000	1,350	900
	공 중 전 화				54,200	36,150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전기통신 ·가스관· 송유관 타 이와 유 사 한 것	수도관· 하수도 관·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직경 0.1미터이하	길 이 1미터	1년	850	550	15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1,750	1,150	30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3,500	2,300	6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5,250	3,500	90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7,000	4,650	1,2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8,750	5,850	1,500
		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3,100	8,750	2,250
		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21,850	14,600	3,750
		직경 3.0미터초과			30,600	20,450	5,250
	기 타 의 관	직경 0.1미터이하	길 이 1미터	1년	1,300	850	20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600	1,750	45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5,200	3,500	9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850	5,250	1,35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0,450	7,000	1,8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3,100	8,750	2,250
		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9,650	13,100	3,350
		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2,750	21,850	5,600
		직경 3.0미터초과			45,850	30,600	7,850

(추 74)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 일	300	200	100
	기 타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 1 호 내지 제 9 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 소재지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를, “병지”는 그외의 지역을 말한다.
-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예: 1,950원→1,900원).
2. 위 표 제 2 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3. 위 표 제 2 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앵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 위 표의 제 6 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주 74)